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989
------	------

2020. 11. 2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0.11.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상위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개정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여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 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한 법규의 제명 및 조문 등 변경 사항 반영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 조항 변경: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제10조 등

나. 조례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함.

- 수피(樹皮) → 나무껍질, 여타(餘他) → 그 밖의, 미연(未然)에 →
미리 등

다.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사항 및 오기사항 등 정비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과 인용조문 변경 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자치법규 일괄개정 사항

-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20년 11월 현재 717건¹⁾의 조례를 제정·시행 하고 있으나,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입법 차원에서 조례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입법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
- 이에 서울시는 2003년 이후 모두 24차례에 걸쳐 자치법규와 각종 위원회를 일괄정비²⁾ 형식으로 정비해 왔음(참고자료Ⅱ).

다.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조문 변경사항, 오기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5건의 조례를 일괄정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는 등 제명 및 조문 변경 등의 사항과 한자어의 순화, 행정기구 개편사항과 오기사항 등을 수정하였음.

1) 서울시 조례와 규칙 등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에 조례 717건, 규칙 240건, 훈령 29건, 예규 10건이 게재되어 있음(2020. 11. 18. 기준).

2) 일괄정비는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손쉽게 개정하는 방법임. 일괄정비 방식에는 부칙에서 다른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과, 일괄개정입법 추진방식이 있음. 이중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은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 개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며, 일괄정비입법 추진방식은 부칙에 의한 다른 법령의 개정이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곤란한 경우 또는 정책의 일괄실시를 위하여 관련조례의 일괄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음.

< 조례안 일괄개정 유형별 주요 예시 >

유 형	유형별 주요 예시	
조문 체계 (낫표, 약칭) 부적합, 오기, 한자어 순화	낫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 「도로법」, *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법」 * 산업발전법 시행령 ⇒ 「산업발전법 시행령」
	약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영 * 제9조의2제1항 ⇒ 법 제9조의2제1항
	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자어 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피(樹皮) ⇒ 나무껍질, * 미풍양속 양양 ⇒ 미풍양속 드높임 * 여타(餘他) ⇒ 그 밖의, * 내경 ⇒ 안지름 * 미연(未然)에 ⇒ 미리, * 사기양양과 ⇒ 사기를 드높이고
법령 등의 제명 및 조항 부조화	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빚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빚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호
행정기구 개편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 경제기획관 ⇒ 경제일자리기획관 * 대외협력담당관 ⇒ 협력상생담당관 * 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지로 1(태평로1가) ⇒ 세종대로 110(舊시청사) * 통일로 684(녹번동) ⇒ 통일로62길 7

-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개별 자치법규의 본원적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비교적 단순한 제명,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상임위 소관주의를 훼손하는 전문성 없는 심사 문제와 논란이 있는 조례안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한 도구화로 악용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이번 일괄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이나 자치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과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관계 법규의 제·개정·폐지 이후 조례의 후속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자료 1]

<일괄정비 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1조	일괄정비 조례의 입법 목적을 정한 목적규정			
제2조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오기 수정
제3조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오기 수정
제4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1호나목	도로법 ⇒ 「도로법」	제명에 낫표(「」) 추가
		제10조제1항 제2호	수피 ⇒ 나무껍질	어려운 한자어 순화
		제18조제1항	산림조합법 ⇒ 「산림조합법」	제명에 낫표(「」) 추가
		제18조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1 제3호의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1의6의 수목진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치료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2016.12.27.일부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08.6.26.일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
		제18조의2 제1항	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규정 없어 제명 전체 기술
		별표1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18.12.31.)]
제5조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1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2020.6.11.)
제6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등	적정성 ⇒ 적절성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4조 등에서 ‘품질관리의 적절성’으로 표기하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통일을 위해 개정
		제13조 제2항	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규정 없어 제명 전체 기술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명에 낫표(「」) 추가
제7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 반영 (조례 제7441호, 2020.1.9. 일부개정)
		제18조의4	법 제25조제12항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1항	⇒ 법 제25조제14항	(법률 제15721호, 2018.8.14., 일부개정)
		제26조제1항 제1호나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오기 정정
		제35조 제4항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 (2016.8.11.)
제8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도로법 ⇒ 「도로법」	제명에 낫표(「」) 추가
		제2조 제8호	미연에 ⇒ 미리	일본식 한자어 정비
제9조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7조	법 제9조제11호 ⇒ 법 제9조제1항제11호	오기 수정
		제26조제1항	영 제23조제5항 ⇒ 영 제23조 제6항	「경관법 시행령」 개정 (2017.2.28.)
		별표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도로법」 전부개정(2014.1.14.)
		별표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도시철도법」 전부개정 (2014.1.7.)
		별표 야간경관 시설란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별표 '빗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로 전부개정(2014.7.17.)되면서 제명 변경 후, 일부개정 (2015.10.8.)으로 조문 변경
제10조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7조 제3항 제1호	경제기획관 ⇒ 경제일자리기획관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19.7.18.)]
제11조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2019.3.28.)되면서 제명 변경
제12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제1항 제10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오기 수정
제13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제8호	「철도건설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2018.3.13.)
제14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7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전부개정(2011.9.29.)
제15조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제4조 제3호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제명 변경(2012.2.16.)
제16조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오기 수정
제17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대통령령 제30918호, 2020.8.5. 일부개정)
		제26조제5항제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2016.3.29.)
		제26조제5항제8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오기 정정
		제26조제5항제9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2011.7.25. 일부개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제3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사항 반영(법률 제16944호, 2020.2.4. 일부개정)
		제31조제4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2020.6.11.)
		제36조 제2항제5호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2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2017.2.8.)
		제36조제3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6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6944호, 2020.2.4.)
제18조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9조 제6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전부개정(2015.5.14.)되면서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폐지
제19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0조제4항	여타 ⇒ 그 밖의	어려운 한자어 순화
		제5조, 제10조제4항	공익신고자보호법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명에 낫표(「」) 추가
		제1조의2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명에 낫표(「」) 추가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	제83조의2 ⇒ 법 제83조의2	- 법 제83조의2를 지칭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제21조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별표 제1호 바목1)	「철도건설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2018.3.13.)
		별표 제1호 카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사항 반영(법률 제17148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22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	「철도건설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2018.3.13.)
제23조	서울특별시	제5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오기 수정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6항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제7조 제1항, 제13조제2 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25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26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27조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제2호	제26조 ⇒ 같은 법 제26조	앞서 기술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지칭하는 것 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오기 수정
제28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9조 제4호자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명 띄어쓰기 반영(법률 제7745호, 2005.12.23. 일부개정)하고, 낫표(「 」) 추가
		제12조	법 제23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23조	약칭 규정 없어 제명 전체 기술
제29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4조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2015.10.8.)
제30조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7조 제2호 가목	대외협력담당관 ⇒ 협력상생담당 관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제31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7호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2017.1.17.)
		제6조 제5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 특별법 제6조제 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 (2018.1.16.)되면서 해당 내용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상향 규정됨.
		제9조제1항	영 별표1의2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3	- 제6조제5항에 있던 약칭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약칭을 새롭게 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 (2018.1.16.) 사항 반영
		제12조제1항	영 별표1의2 ⇒ 영 별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전부개정 (2018.1.16.)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5조	영 별표3의2 ⇒ 영 별표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전부개정 (2018.1.16.)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1항		
		제36조제1항	특별법 제6조 ⇒ 특별법 제1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2017.1.17.)
		제36조제2항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 ⇒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2017.1.17.)
		제38조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17.1.17.)
		제41조	영 별표1의 2 ⇒ 영 별표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 (2018.1.16.)
		제45조 제1항 제3호	영 별표1의2를 ⇒ 영 별표3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 (2018.1.16.)
제32조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제정 (2016.12.27.)
제33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7조 제1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 2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2017.1.17.)
		제26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법 제72조제4항	「도시개발법」 개정사항 반영 (법률 제11068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34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4항 제7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오기 수정
제3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제2항 제3호	▶ 산업발전법 시행령 ⇒ 「산업발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에 낫표(「」) 추가
		제19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명에 낫표(「」) 추가
		제19조의4 제1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 (2017.7.13)
		제22조 제3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25조 제8호나목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오기 수정
		제29조 제9호 나목 등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개정 (2016.3.29.)
		제38조 제5호 다목	지식경제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 (2013.3.23.)]
		제58조 제1항 제2호	법 제120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포함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6.1.19.)
		제58조의2 제1항	법 제113조의3 각 호 ⇒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	오기 수정
		별표 1 제2호 라목(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9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사항 반영 (서울특별시조례 제4879호, 2009.11.11. 일부개정)
		별표 4 제3호다목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 (국토해양부령 제490호, 2012.6.28. 일부개정)
		별표 4 제3호라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법률 제12738호, 2014. 6. 3., 일부개정)
제36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	영 제39조제12호 ⇒ 영 제39조제1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2019.6.18.)
		제42조제8항	제28조제1항 후단 ⇒ 제28조제1항	오기 수정
		제69조제6항	제1항 각 목 ⇒ 제1항 각 호	오기 수정
제3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낫표(「」) 위치 수정
		제7조 제1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38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5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	- “~시행령”을 약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영”으로 수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19.11.26.) 사항 반영
		제6조 제3항	시행령 제10조 ⇒ 영 제10조	제4조에서 약칭 “시행령”을 ‘영’으로 수정한 사항 반영
		제6조의2 등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 ⇒ 영 제10조제3항제3호	제4조에서 약칭 “시행령”을 ‘영’으로 수정한 사항 반영
		제6조의4제1항제5호	제6조의2제1항 ⇒ 제6조의3제1항	오기 수정
		제6조의4제1항제6호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 ⇒ 영 제10조제3항제3호	제4조에서 약칭 “시행령”을 ‘영’으로 수정한 사항 반영
		제8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	제명에 낫표(「」) 추가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4호		
제39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 (2016.1.19.)
제40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	법 제41조에 또는 ⇒ 법 제41조에 따른	오기 수정
		제8조 제2항	법 제15조제3항 ⇒ 법 제15조 제4항	「동물보호법」 개정(2017.3.21.)
		제9조 제2항	법 제15조제6항 ⇒ 법 제15조 제7항	「동물보호법」 개정(2017.3.21.)
		제20조제2항	법 제4조제3항 ⇒ 법 제4조제4항	「동물보호법」 개정(2017.3.21.)
		제24조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동물보호법 ⇒ 법	- 제명에 낫표(「」) 추가 - 제2조제1호에서 「동물보호법」을 ‘법’으로 약칭
제26조제3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오기 수정		
제41조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42조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3조 ⇒ 제14조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8.1.4.)
		제10조제3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2017.9.21.)
제43조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3조 제5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오기 수정
		제5조 제3항	사회적 환경적·생태적 ⇒ 사회적·환경적·생태적	열거된 어구가 대등하고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기 위해 가운뎃점 사용
		제23조제5항	간사와 ⇒ 간사는	오기 수정
제44조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미풍양속 양양 ⇒ 미풍양속 드높임	어려운 한자어 순화
제45조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제6조 제10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오기 수정
제46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59조제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8.12.24.)
제47조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별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2015.1.6.)
		별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으로 제명 변경 (2014.1.28.)
제48조	서울특별시 물의	제6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	오기 수정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제9조 제4호	「도로법」 제34조 ⇒ 「도로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61조	「도로법」 전부개정(2014.1.14.)
		제45조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명에 낫표(「」) 추가
제49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2017.5.18.)
제50조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2조 제3호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5.7.30.)
제51조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8조 제2항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전부개정(2015.5.14.)
제52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오기 수정
		별지 제2호 서식	「도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도로법」 전부개정(2014.1.14.) -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2014.7.14.)
제53조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13조제2항 ⇒ 제13조의3제1항	「산림보호법」 개정(2019.1.8.)
제54조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2014.12.30.)]
제55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제9호, 제44조제6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2020.7.16.)되면서 제명 변경
		제3조제1항 제2호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제명에 낫표(「」) 추가
		제20조 제2항 제2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오기 수정
		제22조제2항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호 ⇒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항제1호	오기 수정
제56조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2019.3.28.) 사항 반영
		제6조 제2항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2019.3.28.) 사항 반영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략위원회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제57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58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3조제4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2020.7.16.)
제59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명에 낫표(「」) 추가
		제5조 제1항	영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앞서 기술된 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힘.
		제10조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로 제명 변경(2010.12.31.) 후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2019.3.28.)
제60조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제4호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오기 수정
		제15조제1호 및 제3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오기 수정
제61조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62조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악취방지법」 제16조의3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	「악취방지법」 개정(2018.6.12.)
제63조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 (2016.3.29.)
		제6조 제1항제2호	제8조 ⇒ 제9조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서울특별시조례 제6711호, 2018.1.4., 일부개정)
제64조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4항 제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17.10.31.)되면서 제명 및 인용조문 변경
제65조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제15조 제2항	「국민제안규정」 제9조의2 ⇒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	「국민 제안 규정」으로 전부개정 (2017.1.6.)되면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변경
제66조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2019.1.15.)
제67조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제3조 제1호 나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의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0.3.26.)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3조 제3호 가목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제명에 낫표(「」) 추가
		제3조 제3호 나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2015.1.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2015.1.20.)
		제3조 제3호 다목	소방시설공사법 ⇒ 「소방시설공사법」	제명에 낫표(「」) 추가
		제3조 제3호 라목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명에 낫표(「」) 추가
		제3조 제3호 마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명에 낫표(「」) 추가
제68조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1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낫표(「」) 위치 수정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2019.3.28.)
제69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1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 (2016.12.27.)
제70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6조 제1항	「수도법」 제26조제3항 ⇒ 「수도법」 제26조제4항	「수도법」 개정(2013.12.30.)
제71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9조제2항 제6호 및 제7호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	제명에 낫표(「」) 추가
		제9조 제2항 제8호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 (2015.5.18.)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 (2015.11.18.)
제72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 (2020.7.16.)되면서 제명 변경
제73조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74조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 제6항	영 제8조제5항 ⇒ 영 제8조제6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2020.1.15.)
		제19조 제3항	제2조 ⇒ 제3조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6944호, 2018.12.31.)
제75조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제3항 단서 및 제5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76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제2조 제3호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1)	해당 인용조문을 명확히 명시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나목 ⇒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2)	해당 인용조문을 명확히 명시
		제5조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명에 낫표(「」) 추가
		제10조 제7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약칭
제77조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전부 개정(2017.9.21.)
제78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 영	제1조에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
		제21조 제3항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 법	제1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약칭
		제31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 법 제9조의2제1항	법 제9조의2제1항임을 명확히 규정함.
		별표 1	「항공법」 ⇒ 「공항시설법」	「항공법」을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분야별로 나누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함.(2016.3.29.)
		별표 1	「철도법」 ⇒ 「철도사업법」	「철도법」 폐지되고, 「철도사업법」 제정(2004.12.31.)
		별표 1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사업법」	오기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조례 제6546호, 2017.7.13. 일부개정)
제79조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4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오기 수정
		제5조 제1항 제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오기 수정
제80조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회계법」 제정(2016.5.29.)되면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2016.11.29.)
제81조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6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2015.10.8.)
제82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7조 제2항 제7호	제39조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던 '생물자원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2019.11.26.)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83조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법 제15조의3 ⇒ 법 제15조의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2019.1.15.)
제84조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오기 수정
제85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제3조 제1호’를 ‘제3조제1호’로 붙여쓰기 함.
		제6조, 제14조 제2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86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8조 제3호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20.1.7.)
		제36조제4항, 제38조	법 제38조제3항 ⇒ 법 제38조 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2016.1.7.)
		별표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 1	제명 변경(대통령령 제27572호, 2016.11.1. 일부개정)
제87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8조제1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88조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제4조 제3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같은 법 제2조제10항 ⇒ 같은 법 제2조제10호	오기 수정
제89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로 제명 변경(2010.12.31.) 후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2019.3.28.)
		제14조 제2항 제3호	경제일자리기획관 ⇒ 거점성장추진단장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등 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0항제5호에 거점성장추진단장의 소관 업무로 분장되어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개정함.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2011.7.25. 일부개정)
		제1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2012.1.25.)
		제20조의4 제1항	제24조의2제2항 ⇒ 제23조의2 제2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1.7.28.)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90조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2015.10.8.)
제91조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정원법 제18조의5 ⇒ 정원법 제18조의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9.1.15.)
		제13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오기 수정
제92조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 제2항제9호	법 제13조제2항 ⇒ 법 제3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2017.2.8.)
		제5조의3 제1항제3호	조례 제15조의4 ⇒ 조례 제15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2018.7.19.)
		제13조 제1항	▶법 제63조제1항·제3항 ⇒ 법 제95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2017.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2018.2.9.)
제93조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2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94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95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별표 제2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2017.10.24.)
		별표 제4호	「폐기물관리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2016.5.29.)
		별표 제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률 제16305호, 2019.4.2.)
		별표 제23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2019.3.28.)
		별표 제30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2020.7.16.)
제96조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제1호	해당 인용조문을 명확히 명시함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13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97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2019.3.28.)
제98조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제3조 제1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오기 수정
		제5조 제9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오기 수정
제99조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2015.12.22.)
		제6조 제1호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법」	제명에 낫표(「」) 추가
제100조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제명에 낫표(「」) 추가하고, ‘제3조 제1호’를 ‘제3조제1호’로 붙여쓰기 함.
		제2조 제4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2020.7.16.)
제101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10조 제4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102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제11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2020.6.11.)
제103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제3호	미풍양속 양양 ⇒ 미풍양속 드높임	어려운 한자어 순화
제104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 제1호라목 등	내경 ⇒ 안지름	어려운 한자어 순화
		별표 3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 (2017.1.17.)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2018.1.16.)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별표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고,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은 분리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2016.1.19.) - 조례 별표 4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내용이므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
제105조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제3급 전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제2급 전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8.3.27.)
제106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6조 제2항, 제113조 제2항, 제119조 제2항, 별표 2, 별표 4, 별표 5	주소 변경 사항	기관 주소 변경사항 반영
		제98조 제1항	사기양양과 ⇒ 사기를 드높이고	어려운 한자어 순화

[참고자료 II]

〈서울시 일괄조례 형식 조례 처리 현황〉

연번	발의일시	조례명(의안번호)	제안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1	2003. 2. 28.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06-00149호)	시장	가결	명칭변경 및 개정된 사무분장에 따른 부서명칭·직명을 정비함. - “기획예산실” → “경영기획실” - “회계과장” → “총무과장” 등
2	2003. 4. 3.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06-00180호)	시장	가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의 부서명칭 및 직명을 정비함. - “보건복지국장” → “복지여성국장” - “보건위생과” → “위생과” 등
3	2003. 8. 14.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06-00287호)	시장	가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산업국 소관 조례의 직명을 정비함. - “기획예산실장” → “경영기획실장” - “산업경제국장” → “산업국장” 등
4	2004. 1. 10.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06-00391호)	시장	가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문화국 소관 조례의 부서명칭 및 직명을 정비함. - “문화관광국장” → “문화국장” 등
5	2007. 10. 2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07-00350호)	시장	가결	지방자치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등

연번	발의일시	조 례 명(의안번호)	제안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6	2008. 4. 15.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07-00455호)	시장	가결	정부조직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 - “건설교통부” → “국토교통부” - “예산청장” → “기획재정부장관” 등
7	2008. 6. 9.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 (의안번호 07-00492호)	의원	폐기	서울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및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맞춤법에 따라 정비함. - “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당해” → “해당” 등
8	2009. 1. 3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07-00751호)	시장	수정가결	위원회 정비 및 관리개선 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함. - 디지털행정추진위원회 및 정보격차해소위원회 →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
9	2009. 10. 30.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07-01055호)	시장	수정가결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첨부서류 감축 등을 반영하여 각종 별지 서식을 정비함. - 별지 서식 “주민등록번호”란 → “생년월일”란 등
10	2010. 10. 29.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08-00142호)	시장	철회	위원회 정비 및 관리개선 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함. - “서울특별시시장 소속하” →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장 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
11	2011. 6.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시장	철회	위원회 정비 및 관리개선 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함.

연번	발의일시	조 례 명(의안번호)	제안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의안번호 08-00344호)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12	2014. 10. 3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9-00133호)	시장	폐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등
13	2015. 9.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09-00714호)	의원	가결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등
14	2015. 10. 3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09-00780호)	시장	폐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등 위원회를 관련 조문을 일괄로 정비함.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등
15	2015. 11. 10.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번호 09-00879호)	의원	가결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의정회” → “서울특별시 의정회” - “「지방공기업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16	2016. 12.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09-01560호)	의원	가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

연번	발의일시	조 례 명(의안번호)	제안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등
17	2017. 10. 16.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09-02111호)	의원	가결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함. - “전면부” → “앞면부” - “적치하거나” → “쌓아두거나” 등
18	2018. 2. 6.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09-02338호)	시장	가결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반영 및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함.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등
19	2018. 10.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10-00169호)	의원	수정가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등
20	2018. 10. 25.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10-00252호)	의원	수정가결	서울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함 -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노동자, 근로계약 → 노동계약 등
21	2019. 1. 17.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번호 10-00320호)	의원	수정가결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지방” 부분을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함.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등

연번	발의일시	조 례 명(의안번호)	제안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22	2019. 1. 29.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번호 10-00346호)	의원	수정가결	서울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한글맞춤법에 따라 정비함. - 기본조례 → 기본√조례, 지원조례 → 지원√조례 등
23	2019. 3. 2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번호 10-00504호)	의원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도시교통본부” → “도시교통실” - “경영기획관” → “재정기획관” 등
24	2019. 5. 8.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번호 10-00637호)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함.
25	2019. 5. 24.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10-00701호)	시장	가결	상위법령의 제명 등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26	2019. 8.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10-00823호)	의원	수정가결	상위법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7	2019. 8. 6.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10-00825호)	의원	수정가결	모성 보호의 개념이 모·부성권 보장의 개념으로 전환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모성 보호, 모성권 보장 → 모성 보장
28	2019. 8. 2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의원	수정가결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표현을

연번	발의일시	조 례 명(의안번호)	제안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의안번호 10-01012호)			한글맞춤법에 따라 순화함. - “기타” → “그 밖에” - “당해” → “해당” 등
29	2020. 4. 3.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0-01439호)	시장	가결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정비함.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정” → “소방정” 등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89
----------	------

제출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상위법령 또는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한 법규의 제명 및 조문 등 변경 사항 반영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 조항 변경: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제10조 등

나. 조례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함.

- 수피(樹皮) → 나무껍질, 여타(餘他) → 그 밖의, 미연(未然)에 → 미리 등

다.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사항 및 오기사항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

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수피”를 “나무껍질”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1 제3호의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1의6의 수목진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관리청란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등”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을“(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적정성”을 각각 “적절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의뢰시기 등)”을“(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시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적정성”을 각각 “적절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적정성”을 각각 “적절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한다.

별표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적정성”을 각각 “적절성”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호”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중 “법 제25조제12항”을 “법 제25조제14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4항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1호”를 “법 제9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도로의 경관심의 대상(안)란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표 도시철도의 경관심의 대상(안)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표 야간경관 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안)란 중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별표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을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경제기획관”을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

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5호 중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중 “여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4항 중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각각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제83조의2”를 “법 제83조의2”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1)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제26조”를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자목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23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대외협력담당관”을 “협력상생담당관”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7호 중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을 “특별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별표1의2”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 별표1의2”를 “영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영 별표3의2”를 각각 “영 별표 8”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특별법 제6조”를 “특별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38조 중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1조 중 “영 별표1의 2”를 “영 별표 3”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영 별표1의2를”을 “영 별표 3을”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72조제3항”을 “법 제72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7호 중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5조제8호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로 한다.

제29조제9호나목, 제37조제8호나목, 제38조제9호나목 및 제55조의2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38조제5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20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법 제113조의3 각 호”를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의 허가 기준란 (1) 중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9조”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영 제39조제12호”를 “영 제39조제14호”로 한다.

제4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1항 후단”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9조제6항 중 “제1항 각 목”을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

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5호”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시행령 제10조”를 “영 제10조”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4제1항제6호 중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를 각각 “영 제10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제5호 중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법 제41조에 또는”을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동물보호법”을 “법”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곡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사회적·환경적·생태적”을 “사회적·환경적·생태적”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간사와”를 “간사는”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풍양속 양양”을 “미풍양속 드높임”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 전반적 금지의 금지영업 및 시설란 제9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인사동 문화지구 주가로변 지역에서 전반적 금지의 금지영업 및 시설란 제14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서

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도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44조제6호 중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호”를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

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을 “「악취방지법」 제16조의7”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민제안규정」 제9조의2”를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의2”로 한다.

제3조제3호가목 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

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법」 제26조제3항”을 “「수도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각각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영 제8조제5항”을 “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을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을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2)”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7항 본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제9조의2제1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산업·교통분야의 시설의 종류란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표 공공·공용분야의 시설의 종류란 중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제39조”를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5조의3”을 “법 제15조의10”으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을 “법 제4조제6호”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

다.

제86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중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3항”을 각각 “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산정기준란 2.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 1”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로, “같은 법 제2조제10항”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경제일자리기획관”을 “거점성장추진단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동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제24조의2제2항”을 “제2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원법 제18조의5”를 “정원법 제18조의6”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9호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3호 중 “조례 제15조의4”를 “조례 제15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3항”을 “법 제95조제1항, 제3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4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5조(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고,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하며, 제8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으로 하고, 제23호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하며, 제30호 중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6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을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7조(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8조(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조제9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9조(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100조(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01조(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2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3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미풍양속 양양”을 “미풍양속 드높임”으로 한다.

제104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내경”을 각각 “안지름”으로 한다.

별표 3 □ 사용료 산정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 수질하수도사용료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5항 별표1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 14”로 한다.

별표 4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5조(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제2급 전염병”으로 한다.

제106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중 “을지로 1(태평로1가)”를 “세종대로 110(舊시청사)”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사기양양과”를 “사기를 드높이고”로 한다.

제113조제2항 중 “168”을 “160”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통일로 684(녹번동)”을 “통일로62길 7”로 한다.

별표 2 수도사업소 제2호의 위치란 중 “통일로 26길”을 “통일로26길”로, 제

3호의 위치란 중 “고산자로 10길”을 “고산자로10길”로, 제5호의 위치란 중 “목동 동로”를 “목동동로”로, 제6호의 위치란 중 “여의대방로 10길”을 “여의대방로10길”로 하고, 같은 표 아리수정수센터 제3호의 위치란 중 “왕십리길 27(성수1가동)”을 “왕십리로 27(성수동1가)”로 한다.

별표 4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위치란 중 “남산공원길 649 (회현동1가)”를 “삼일대로 231(예장동)”으로 하고, 같은 표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의 위치란 중 “여의대방로 98(신대방동)”을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으로 한다.

별표 5 서울특별시남부도로사업소의 위치란 중 “1451”을 “145”로 하고, 같은 표 서울특별시북부도로사업소의 위치란 중 “768”을 “913”으로 하며, 같은 표 서울특별시강서도로사업소의 위치란 중 “양천길 510”을 “양천로 23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5개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비용을 수반하지 의안으로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작성자

법무담당관 박태준(2133-6692)